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32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이기헌・김교흥・박해철

박지원 • 박수현 • 이훈기

곽상언 · 정동영 · 장철민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사고 유형을 파악해 안전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 그 럼에도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는 절차나 사고 조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과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기록대장을 매년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배포 및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결과에 따라"를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로 한다.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 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보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 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3항에"를 "제33조의2제6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 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조사) ①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신 설>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신 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 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 이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 중대 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 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6)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 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 4. 제33조의2제6항에-----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보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 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 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 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 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 일 ·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배포와 제2항 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조(벌칙)	-
	_
	_
	_

- 1. ~ 3. (현행과 같음)